



음성출력용바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두61310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도선여객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86 (개포동)
 대표이사 이중원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오인숙, 윤길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수행자 김선희, 이광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박성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30134 판결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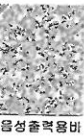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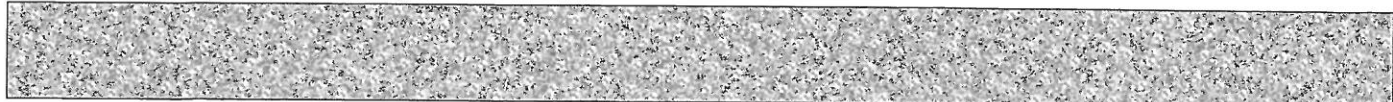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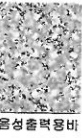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16.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u>조희대</u> 
주심	대법관	김창석	<u>김창석</u> 
	대법관	박상옥	<u>박상옥</u> 





음성출력용바

정본입니다.

2017. 3. 16.

대법원

법원사무관 김창곤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